

제16장 분쟁해결

제 16.1 조 협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하며,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 16.2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한쪽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여기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또는
-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

제 16.3 조 분쟁해결절차의 운영

각 당사국은 제16.8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 행정적 지원의 제공을 담당할 부서를 지정한다. 각 당사국은 지정된 부서의 운영 및 비용을 책임지고 그 소재지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제 16.4 조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

- 특정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청했거나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했으면, 선택된 분쟁해결 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 16.5 조

협의

-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16.2조에 기술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협의를 개시한다.
- 협의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접수부터 10일 내에 그 요청에 응답하고,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다음의 기간 이내에 선의로 협의를 개시한다.
 - 부패성 상품¹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 사안에 대한 요청의 접수일 후 15일, 또는
 - 그 밖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요청의 접수일 후 30일

1 “부패성 상품” 이란 특히 적절한 저장 조건이 없는 경우 그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급속히 부패되는 상품을 말한다.

3. 협의는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기술적 수단으로 개최된다.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협의는 대면의 경우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4. 이 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의 요청을 접수한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광범위한 시각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사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및 그 밖의 대중 구성원의 견해를 구한다.

5. 각 당사국은

가.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이 협정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당사국은 협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정부 기관 또는 그 밖의 규제기관의 직원을 이 조에 따른 협의 동안 활용 가능하도록 다른 쪽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7. 이 조에 따른 협의는 비밀이며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에서든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와 무관하다.

제 16.6 조

공동위원회 회부

1. 양 당사국이 제16.5조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전달부터 60일 내에, 또는 사안이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것인 경우 20일 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

다.

2. 공동위원회는 신속하게 회합하고,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16.7 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양 당사국은 언제든지 주선, 조정 및 중개와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른 절차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종료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이 장에 규정된 패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시작될 수 있고 계속될 수 있으며 종료될 수 있다.
3. 주선, 조정 또는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비밀이며,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와 무관하다.

제 16.8 조 패널의 설치

1. 제16.6조에 기술된 통보의 전달 후 60일 내에, 사안이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30일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간 내에 공동위원회가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분쟁해결패널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의 적시와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포함한 요청의 사유를 명시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 당사국은 패널을 선정할 때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 가.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나.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패널 설치 요청 접수 후 20일 내에 패널위원을 임명한다. 양 당사국은 제1항에 따른 패널 설치 요청 접수 후 40일 내에 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세 번째 패널위원을 공동합의로 임명한다.
- 다. 어느 한쪽 당사국이 나호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20일의 기간 내에 WTO 사무총장에게 임명되지 않은 패널 위원을 요청부터 20일 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요청을 할 수 있다.
- 라. 다호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일부터 20일 내에, WTO 사무총장 자신이 임명되지 않은 패널위원을 임명할 수 없다고 양 당사국에 통보하거나 임명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에게 임명되지 않은 패널위원을 요청부터 20일 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요청을 할 수 있다.
- 마. 양 당사국이 나호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패널의장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음 10일 내에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각 3명의 후보자들로 구성된 당사국 각각의 명부를 교환한다. 패널의장은 양 당사국이 각국의 후보자 명부를 교환하는 기한의 만료부터 10일 내에 명부에서 추첨으로 임명된다. 추첨에 의한 패널의장의 선정은 공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 바. 당사국이 마호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후보자 3명의 명부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의장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출한 명부에서 추첨으로 임명된다.
3. 패널의 구성일은 3명의 선정된 패널위원 중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이다.
4. 제2항에 따라 패널에 임명된 개인은

- 가.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 나. 법, 국제무역 또는 국제무역 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 다.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휴 관계에 있거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 라.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될 행동 규범을 준수한다.

제 16.9 조 절차 규칙

-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부속서 16-가(절차규칙)에 규정된 절차규칙을 따르고, 양 당사국과의 협의 후, 부속서 16-가(절차규칙)에 불합치하지 않는 추가적인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 2. 양 당사국이 패널 설치 요청 접수일부터 20일 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제16.8조에 따른 패널 설치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사유와 함께 법 및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고, 결정 및 권고를 하는 것”
- 3. 패널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 발의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위원의 보수와 패널의 그 밖의 비용은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 16.10 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의장이 임명된 후 90일 내에 사실의 조사결과와 다음에 대한 판정, 그리고 그 조사결과 및 판정에 대한 사유를 포함한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1)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또는
2)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는지 여부, 그리
고

나. 패널이 다루도록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그 밖의 모든 사안

2. 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3. 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에 성문화된 것을 포함하여 국제 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해석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해석한다. 중재 패널의 판정은 이 협정에 따라 규정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

4. 양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부터 14일 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최초 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6.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부터 45일 내에 양 당사국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양 당사국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그로부

터 15일 내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7. 패널의 최종 보고서의 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국을 구속하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 패널이 조치가 이 협정에 불합치하거나,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패널은 피소 당사국에 그 조치를 이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또는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제 16.11 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접수하면, 양 당사국은 패널의 판정과, 권고가 있을 경우 그 권고에, 통상적으로 합치하는 분쟁해결에 합의한다.

2. 패널이 최종보고서에서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경우,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그 불합치를 제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제 16.12 조 불이행

1. 패널이 제16.11조제2항에 기술된 유형의 판정을 내렸고 양 당사국이 최종보고서 접수부터 45일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내에 제16.11조제1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상호 수용가능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2. 양 당사국이

가. 그러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개시된 후 30일 내에 보상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 나. 보상 또는 제16.11조제1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합의했으나, 피소 당사국이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제소 당사국이 여기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동등한 효과를 갖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고자 한다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 할 수 있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수준이 명시된다. 제소 당사국은, 각 경우에 맞게, 이 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거나 패널이 제3항에 따라 판정을 내린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30일 후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어떠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할 때,

- 가. 제소 당사국은 제16.10조에 언급된 패널 보고서가 이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확인한 그 동일 분야 또는 분야들에 대하여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우선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 나. 제소 당사국이 동일 분야 또는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밖의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을 통보하는 통지에는 그 기초가 되는 이유를 적시한다.

4. 피소 당사국이

- 가.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여기거나

- 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를 제거했다고 여기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한 후 30일 내에, 패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소 당사국은 자국의 요청을 서면으로

제소 당사국에 전달한다. 패널은 그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재소집하고, 가호 또는 나호 중 하나에 대한 요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한 후 90일 내에, 또는 가호 및 나호 모두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는 120일 내에, 자신의 판정을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정지하겠다고 제안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패널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여기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수준을 판정한다.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에 대하여 판정을 제출하기 전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할 수 없다.

5.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를 제거했다고 패널이 판정하지 않는 한, 제소 당사국은 제4항에 따라 패널이 판정한 수준, 또는 패널이 그 수준을 판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수준까지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6.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일시적이며, 최종 보고서가 이행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이를 때까지 적용된다.

제 16.13 조 준수 검토

1. 제16.12조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를 제거했다고 피소 당사국이 여기는 경우, 그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그 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요청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재소집하여 피소 당사국이 통보를 한 후 90일 내에 그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2.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를 제거했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이 제16.12조에 따라 정지했던 혜택을 신속하게 복원한다.

제 16.14 조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1. 양 당사국은 패널이 그러한 합의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패널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양 당사국은 공동으로 패널 의장에게 통보한다. 12개월이 만료된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분쟁 을 심리할 수 있는 패널의 권한은 실효된다.
2.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가 양 당사국에 제출되기 전 언제든지 패널 의장에게 공동으 로 통보함으로써 패널 절차를 종료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부속서 16-가

절차 규칙

적용

1. 다음의 절차 규칙은 제16.9조에 따라 수립되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16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된다.

정의

2. 제16장(분쟁해결)과 이 부속서의 목적상

가. **자문인이**란 당사국이 고용한 인으로서, 패널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 자문하거나 그 당사국을 보조하는 인을 말한다.

나. **보조인이**란 패널위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거나 패널위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다. **제소 당사국**은 제16.8조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라. **패널이**란 제16.8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마. **패널위원이**란 제16.8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그리고

바. **피소 당사국이**란 제소 당사국이 제16.8조에 따라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했다는 것을 명시하는 서면 통보를 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3. 절차 규칙에서 이루어진 조에 대한 언급은 제16장(분쟁해결) 내 적절한 조에 대한 언급이다.

절차의 운영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심리가 개최되는 영역의 당사국은 분쟁해결 절차의 행정 운영, 특히 심리의 행정사항을 담당한다.

통보

5. 양 당사국과 패널은 이메일, 그리고 양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수령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쿠리어, 팩스 또는 발송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수단으로도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전송한다.

6. 당사국은 분쟁해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다른 쪽 당사국과 각 패널위원에게 자국의 서면입장의 각각의 사본을 제공한다.

7. 모든 통보는 작성되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조지아의 경제지속가능개발부 또는 그 승계기관에 각각 전달된다.

8. 마감시한은 그러한 서면입장 또는 문서의 접수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9. 패널 절차와 관련된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수정될 수 있다.

10. 문서 전달을 위한 마지막 날이 한국 또는 조지아의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 문서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마감시한 내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패널절차 개시

1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WTO 기준을 따를, 패널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또는 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러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패널 설치일부터 15일 내에 양 당사국은 패널과 회합한다. 그러한 회합은 전화 또는 영상 회의로 개최될 수 있다.

최초 서면입장

12. 제소 당사국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후 20일 이내에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입장 접수일 후 20일 이내에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패널절차의 수행

13. 패널 의장은 패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패널은 행정적 및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4.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패널은 전화, 팩스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하는 모든 수단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5.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 후에 보조인이 그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한 심의에 출석하는 어떠한 인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논의된 어떠한 정보도 양 당사국에 공개하지 않는다.

16. 판정문의 초안 작성은 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하며 위임되어서는 안된다.

17. 이 부속서를 포함하여 제16장(분쟁해결)의 규정이 다루지 않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패널은 그러한 규정과 양립 가능한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8. 패널이 절차에 적용 가능한 기한을 수정하거나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패널은 변경 또는 조정의 이유와 필요한 기간 또는 조정내용을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알린다.

심리

19. 패널 의장은 양 당사국 및 다른 패널위원과 협의 후에 심리 장소 및 일시를 정한다. 의장은 그 결정된 심리 장소 및 일시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양 당사국 중 어느 한 쪽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은 심리를 열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20.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심리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실시되며, 첫 번째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21. 패널은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

22. 모든 패널위원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참석한다.

23. 다음의 인은 심리가 대중에게 비공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의 대표자

나. 양 당사국의 자문인

다. 행정인력, 통역사 및 번역가, 그리고

라. 패널위원의 보조인

양 당사국의 대표자와 자문인만이 패널에 발언할 수 있다.

24. 패널은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방식으로 심리를 수행한다.

변론

가. 제소 당사국의 변론,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변론

반박 변론

가. 제소 당사국의 변론,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반박 답변

25. 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라도 어느 한쪽 당사국에 직접 질문할 수 있다.

26. 패널은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고 심리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양 당사국에 전달되도록 주선한다. 양 당사국은 속기록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패널은 그러한 의견을 검토할 수 있다.

27. 각 당사국은 심리일 후 20일 내에 심리 동안 발생한 모든 사안에 관하여 보충적 서면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서면 질문

28. 패널은 절차 동안 언제라도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 서면으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패널이 제기한 모든 질문의 사본을 받는다.

29. 한쪽 당사국은 패널 질문에 대한 자국의 서면 답변서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 또한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답변을 접수한 날부터 5일 내에 그러한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가진다.

비밀유지

30. 패널의 심리와 패널에 제출된 문서는 비밀로 유지된다.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패널에 제출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를 언급할 때 그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쟁에 대한 한쪽 당사국이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진술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일방적 접촉

31. 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과 회합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다른 패널위원의 참석 없이,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패널위원과도 접촉할 수 없다.

32. 어떠한 패널위원도 다른 쪽 당사국과 다른 패널위원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과 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할 수 없다.

외부조언자의 서면입장

33.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설치일부터 3일 내에, 패널은 양 당사국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자발적인 서면입장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면입장은 패널의 설치일부터 10일 내에 제출되고,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보다 더 길지 않아야 하고, 패널이 검토 중인 사실적 및 법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34. 그 서면입장은 국적 또는 설립 장소, 활동 성격 및 자금 조달 출처를 포함한 그 제출인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그 인이 절차에서 가지는 이해관계의 성격을 명시해야만 한다.

35. 패널은 자신이 접수했던 제33항 및 제34항에 합치하는 모든 서면입장을 판정에 목록화한다. 패널은 이러한 서면입장에서 제기된 사실적 또는 법적 주장을 자신의 판정에서 다루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제33항 및 제34항에 따라 패널이 획득한 서면입장은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에 제출된다.

양 당사국의 의견은 패널의 통보로부터 10일 내에 제출되고, 패널은 그러한 의견을 고려한다.

기한 계산

36. 특정 일자 또는 사건의 전이나 후 수일 내에 이 협정 또는 이 부속서에 따라 어떠한 일이 완료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패널이 어떠한 일의 완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특정 일자 또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일자는 그 일수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37. 이 부속서 제10항의 적용을 이유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문서를 접수한 날과 다른 날 그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문서의 접수일을 기초로 계산되는 모든 기한은 그 문서가 접수된 마지막 날부터 계산된다.

작업 언어

38. 분쟁해결절차의 작업 언어는 영어이다. 서면입장, 서류, 구두 변론 또는 발언, 패널 보고서 및 양 당사국 간 그리고 패널과의 모든 서면 및 구두 의사소통은 영어로 한다.